

1. 개정이유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에도 검정증인을 표시하도록 하며, 인증제도 정비 대상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제외하고, 기관 소관 법령 간 수수료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진 자료제공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검정기준을 충족한 검정증인 부착 대상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까지 포함(안 제3조제5항)
- 나.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3제4항)
- 다. 관측장비 검정항목 확대(안 별표1)
- 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검정증인 삭제(안 별표2)
- 마. 자료제공 수수료 중 전산처리자료 수수료 인하(안 별표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00. ~ 12. 00.)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관측”을 “관측 장비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으로, “표시”를 “각각 표시”로 한다.

제3조의3제4항 중 “지정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정대행기관명
2. 사무소 소재지
3. 검정대행업무 범위
4. 지정일 및 업무 개시일

별표 1 제1호가목의 검정 항목란 중 “선형성”을 “선형성, 입출력반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검정 항목란 중 “입출력반응(지표형, 시추형)”을 “입출력반응”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검정 항목란 중 “선형성”을 “선형성, 입출력반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검정 항목란 중 “입출력반응(지표형, 시추형)”을 “입출력반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정에 합격한 관측 장비

별표 2 제1호 중 “내용”을 “필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0mm ▶				
검정 면제 필증				▲ 40mm ▼
검정·교정번호	제	호	호	
관측 장비의 제작번호			호	
검정·교정연월일		년	월 일	
검정·교정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검정·교정기관명				

별표 3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

(제9조제5항 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1.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증명	1통당 500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 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 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자료		
1) 1GB 미만	1,800원	
2) 1GB 이상 ~ 100GB 미만	1,810원	1GB당 10원
3) 100GB 이상 ~ 1TB 미만	2,800원	1GB당 20원
4) 1TB 이상 ~ 10TB 미만	21,280원	1GB당 30원
5) 10TB 이상 ~ 50TB 미만	297,760원	1GB당 40원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1면당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를 더하여 산정 하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TB는 1,024GB로 본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 및 배송료는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3.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4.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를 이용하거나, 자료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팩스/휴대전화)	
	주소		
신청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		
	지방		
	기간		
	용도	자료종류 및 수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상 청 장
위탁받은 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분	처리기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가. 인쇄 및 복사	즉시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자료			
1) 1GB 미만	즉시	1,800원	1GB당 10원
2) 1GB 이상 ~ 100GB 미만	2일	1,810원	1GB당 20원
3) 100GB 이상 ~ 1TB 미만	7일	2,800원	1GB당 30원
4) 1TB 이상 ~ 10TB 미만	15일	21,280원	1GB당 40원
5) 10TB 이상 ~ 50TB 미만	30일	297,760원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2일	1면당 1,000원	

비고: 1.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호와 같습니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 및 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자료 제공

신청인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지진·지진해일·화산 자료 담당부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 ④ (생 략)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 정 기준을 충족하는 <u>관측 장비</u> 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u>표시</u> 해야 한다.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관측 장비</u> <u>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관측</u> ----- <u>각각 표시</u> ---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 관 지정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 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u>지정 내용</u> 을 고시해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 관 지정 절차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u>다음 각 호의 사항</u> -----. <u>1. 검정대행기관명</u> <u>2. 사무소 소재지</u> <u>3. 검정대행업무 범위</u> <u>4. 지정일 및 업무 개시일</u>